

[사 건 명] 행심 2015-10

##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12.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중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4. 12. 10. 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2014. 12. 10.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4. 12. 1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5. 03.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하루 전에 통보 받아 아무런 준비 없이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준비할 권리를 침해한 것인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교감, 생활교육부장, 경찰관 등이 문책을 받거나 해명을 하여야 할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 흠결이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교무부장과 학생부장이 학교폭력 이외의 사항에 발언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여 청구인의 입장을 해명하지 못하여 결국 심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청구인은 ○○○에게 가한 행동이 폭력이 아니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고, 조사과정이 객관적이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준비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학교직원들이 여러 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개최에 대하여 안내를 한 만큼, 청구인의 준비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리과정의 절차위반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 이 사건 청구인의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부당한 경찰출동 및 ○○○의 부친을 모독하는 등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벗어난 진술을 하여 자제할 것을 요청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은 ○○○에게 가한 행동이 폭력이 아니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폭력을 인정하였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은 2014. 8. 중순경부터 청구인의 말투와 행동을 흉내내며 괴롭혔고,
- (2) 청구인은 2014. 9. 12. 경 ○○○이 청구인의 다리털의 접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빈정거리는 말투로 계속 따라하여 청구인이 ○○○을 폭행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준비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학교직원들은 2014. 11. 27. 경과 2014. 12. 4. 경에도 청구인에게 담임종결이 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사실을 고지하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통보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의 지침에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14. 12. 4. 담임종결이 되지 않게 됨에 따라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급박히 문자 또는 서신으로 개최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의 준비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교감이나 학생부장이 ○○○ 부의 112신고로 인한 경찰관의 출동에 대하여 미흡한 처리를 하였고, ●●●경찰관이 민원업무에 태만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교감이나 학생부장 또는 경찰관이 문책을 당하거나 해명할 사유라고 보여지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제척, 회피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리과정의 절차위반을 주장하나, 청구인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당한 경찰출동과 그로 인한 경찰관의 조사 및 학교 측 미흡한 대처부분에 대하여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청구인 측의 발언을 제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정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은 ○○○에게 가한 행동이 폭력이 아니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에 대한 폭력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비록 ○○○이 먼저 시비를 건 점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폭력이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거론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은 이 사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경한 조치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서면사과를 이미 하였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행동의 경위 등을 감안 하면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